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709
----------	-------

발의연월일 : 2026. 3. 24.

발 의 자 : 조인철 · 박지혜 · 박희승  
이정문 · 정준호 · 민형배  
박균택 · 한정애 · 어기구  
양부남 · 이정현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의 상영등급을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구분하고, 12세 이상 관람가 또는 15세 이상 관람가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 해당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람을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12세 이상 관람가 또는 15세 이상 관람가의 연령 기준은 만 나이로 적용되고 있어, 같은 학년에 재학 중인 동일 집단의 청소년 사이에서 생일의 차이로 특정 영화의 관람 가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으며, 실질적인 나이 인식과 법적 기준 사이의 괴리로 인한 관람 연령에 혼란이 초래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12세 관람가 및 15세 관람가의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 연도에 12세 또는 1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현장에서 혼란을 해소하고 청소년이 또래 집단에서 불필요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및 제50조제3항).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호 중 “사람”을 “사람(12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사람”을 “사람(1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50조제3항제2호 중 “사람”을 “사람(12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사람”을 “사람(1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한다)”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p>상의 <u>사람</u>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p>	<p>-----<u>사람(1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을 포함한다)</u>----- -----</p>
<p>4. 5. (생략) ③ ~ ⑩ (생략)</p>	<p>4. 5. (현행과 같음) ③ ~ ⑩ (현행과 같음)</p>
<p>제50조(등급분류)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의 등급은 비디오물의 내용, 영상 및 대사 등의 표현 정도에 따 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 다.</p>	<p>제50조(등급분류) ① . ② (현행 과 같음) ③ ----- ----- ----- ----- -----</p>
<p>1. (생략) 2.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 상의 <u>사람</u>이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p>	<p>1. (현행과 같음) 2. ----- -----<u>사람(12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을 포함한다)</u>----- -----</p>
<p>3.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 상의 <u>사람</u>이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p>	<p>3. ----- -----<u>사람(1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을 포함한다)</u>----- -----</p>
<p>4. 5. (생략) ④ ~ ⑦ (생략)</p>	<p>4. 5.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p>